

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연말장식,조명 설치 시방서

제1장. 일반사항

본 사업은 “연말장식,조명 기획 설치 공사”에 있어,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(이하 “발주자”이라 한다)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사항 및 요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비납품, 설치, 시스템 구성 및 테스트,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공사업명 : 연말장식,조명 기획 설치 공사

2. 공사 범위

가. 본 지방서는 당 아파트 연말장식, 조명 기획 설치공사에 적용한다.

나. 본 공사의 시공은 지방서에 따르며,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해당사항을 적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.

다. 본 지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며, 공고규격및 계약조건 등 입찰·계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(권리분쟁)이 발생한 경우, 수요처의 해석에 따른다.

3. 입찰참가자격

가.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96호 제26조(참가자격의 제한)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

나.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

4. 납품 및 설치장소 :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

- 제2장 특기사항 참조

5. 납품 및 설치 기한

계약일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제품의 설치,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한다.

6. 관련 법규 및 의무사항

관련 법규는 연말장식, 조명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계약조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적용하며, 이외 사항에도 관계된 기타 관련 법규,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한다.

7. 하자 기간

납품 설치 후 3개월(하자이행증권 발행)

8. 제출 서류

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“발주자”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.

가. 착공 전

- 1) 계약이행보증증권(20%)
- 2) 착공계 1부

다. 완료 및 검수 시 제출 서류

- 1) 준공계 1부
- 2) 공사완료보고서(설치사진, 시스템 설치내역) 1부
- 3) 하자이행증권 1부(3개월)
- 4)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 등

9. 사용자재 및 기기

가. 본 자재는 KS규격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의 제품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.

나.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기 제출한 규격서와 제품 및 자재의 부합여부를 발주자에게 확인 받은 후 본 작업에 임할 수 있다.

다.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일체를 일괄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.

마. 본 구축에 따른 운반, 설치,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고 설치하고,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.

- 바. 발주자가 설치시스템의 내용이 사양서에 요구되는 성능, 사양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라. 본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.

10. 현장대리인

- 가. 현장대리인은 설치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납품, 설치, 안전관리, 작업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관리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.

11.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설치과정에서 건물 또는 기존 시설의 피해가 있을 시는 원상복구토록한다. 설치 시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해 설치 중 또는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처리해야 한다.
- 나. 설치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해당부서의 허가 없이 기존 시설물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장비설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서 제공한 기술자료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세부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마. 설치도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설치 하여야 하며,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바. 설치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.

사. 작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규정하고 주말(토, 일)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.

12. 시험, 검사 및 통합테스트

- 가. 시험 및 검사는 설치 완료 및 시스템 구성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시험, 검사 및 통합테스트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정을 받아야 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,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며 검사 또는 통합테스트 실시 전에 발주자에게 검사 및 통합테스트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마. 시운전 시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필히 상주시켜 테스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13. 설치완료

- 가. 설치완료라 함은 납품, 설치, 테스트 완료 후 계약 지방서에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정상 운용될 때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자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완료한 날로 한다.
- 나. 검사가 끝나 설비가 인도되어도 뒷정리, 자재정리 및 잔여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한 본 사업의 공사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.

14. 무상하자보증 및 품질보증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.
- 나. 본 사업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위 기간 중 자재의 결함 발생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.
- 다. 무상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 부주의를 제외하고 즉시 책임보수를 하여야 한다.

15. 보안기준

- 가. 본 사업과 관련된 시방서 등의 관련 자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도록 하며, 납품 중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, 이로 인한 법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- 나. 본 사업에 대한 관련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, 현장 입/출입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 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민/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
- 다. 본 사업 완료시 발주자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 및 삭제하여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설치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, 발주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16. 폐기물 처리

- 가.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적재하며, 보관시 분실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해야 한다.
- 나. 폐 케이블 및 전선류는 재활용품과 폐품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1)항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장 특기사항

1. 연말장식 및 조명 설치 구역

가. 설치 위치(도면 필요시 요청)

- 1) 중앙광장
- 2) 101동, 102동, 103동

2. 작업 내역

- 가. 작년에 사용한 2.2m(3개), 5m(1개), 6m(1개) 트리를 재활용한다.
- 나. 중앙광장 및 주변 설치방법에 대해 업체에서 제출한 기획안에 따라 설치를 진행한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공사 집행 중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라. 자재비(전구, 전선 등 잡자재비 포함), 인건비, 장비대여료(크레인 등) 등 제반경비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견적금액에 포함한다.

3. 기타 사항

- 가.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,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- 1) 설계도서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
 - 2)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4. 계약상대자의 의무

- 가. 시방서와 설계 디자인과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,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나. 도급자는 고소작업 등 공사시행에 따른 안전조치를 강구해야

하며, 불이행에 따른 안 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다. 공사 중 도급자 과실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기타
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.
라. 설치일은 2026년 11월 30일까지, 철거일은 2026년 2월 1일까지
이며, 발주자와 협의 후 일정을 확정하여 설치 및 철거에
차질이 없도록 한다.